생각대로

Ver2.0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위치조회자				
	지 자 체 명 (담 당 자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 회 목 적	산불발생위치관제
	※ 위치 조회자는 동의자의 위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조회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1588-4370)으로 연락 주셔야 합니다.			

조회동의자		
	성 명	
	주 소	
	전 화 번 호	
	※ 위치 조회 동의자는 자신이 소지한 산불위치관제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조회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동의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 (1588-4370)으로 연락주셔야 합니다.	

■ 일반사항 동의

본인은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위치정보활용약관] 및 [후면 위치 정보법]에 대한 각종 이용 안내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합니다.
위치 조회자와 위치 동의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위치정보 활용에 동의 합니다.

위치 조회자 (지자체명/담당자명)		조회 동의자	인 서명/

■ 위치정보법에 명시한 조회동의자 권리 교육 이수 및 내용 동의

본인은 산불위치관제시스템과 소지한 산불위치정보단말기를 이용한 위치정보의 획득 및 활용 방법, 위치 정보법에서 정한 위치정보의 활용 범위 및 단말기를 소지한 본인의 권리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산불위치정보 단말기 소지에 동의 합니다.

조회 동의자	인 서명/

201 년 월 일

SK telecom SK텔레콤주식회사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약관 사항(요약)

● 사업자 고지의무

상호 : SK텔레콤㈜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5(을지로 2가) SK T-타워
전화번호 : 1588-4370
개인정보관리책임 : SK텔레콤 기업사업본부 M2M사업팀 / 김우용 팀장
연락처 : pam@kworks.co.kr

● 조회동의자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① 동의인은 상기 사업자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 할 수 있으며 제공한 개인 위치 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개인 위치정보 열람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웹사이트 및 사업자가 지정한 경로를 통해서 열람하도록 합니다.

② 조회동의자의 조회 기록은 조회일로부터 720시간 이전 기록까지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③ 본 동의서에 동의된 개인위치정보는 본 동의서에 명기된 조회자가 산불위치관제시스템(http://sanbul.forest.go.kr)을 이용하여 조회 동의자 소지한 산불위치정보단말기의 위치를 확인하는데 사용됩니다.

④ SK텔레콤㈜는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제공 목적으로 수집된 산불위치정보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서비스 운영사인 ㈜케이웍스에 제공합니다.

⑤ 동의자는 각 항목 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위치기반서비스 내용

① 동의자가 소지한 산불위치정보단말기로부터 산불발생시 동의자의 조작에 따라 위치정보가 사업자인 SK텔레콤㈜을 통하여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서비스사인 ㈜케이웍스에게 전달됩니다.

② 전달된 위치정보가 산불위치관제시스템에 표출되어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담당자에게 전달되어 산불진화 작업 위치확인에 사용됩니다.

③ 산불위치관제시스템은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산불위치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산불위치관제시스템은 동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시스템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준수합니다.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요약)

※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요약)

● 제24조 (개인위치정보 제공사실의 통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하는 때에는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 단말장치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1.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 단말장치 외의 통신 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 제 15조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 29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 또는 경보발송 요청이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 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대여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대여받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제16조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의 취급·관리 지침을 제정하거나 접근 권한자를 지정하는 등의 관리적 조치와 방화벽의 설치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보존실태를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9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3.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4.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 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 한 후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 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제공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

● 제25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2항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자고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8조제2항, 제19조제4항 및 제2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법정대리인"으로 본다

● 제26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금치산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접재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자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
2. 금치산자의 법정 대리인
3. 제1항 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장, 정신보건 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 질환자
사회복지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장,정신보건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의 장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8조 내지 제 22조 및 제224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의 의하여 보호의무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보호의무자"로 본다.

※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ekcc.go.kr)에 공개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